

제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 1)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 2)장기요양 인정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변경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 3)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계약목적

-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 2)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1)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2023.01.01. 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15%기준)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원)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본인부담금	282,750	253,500	212,580	195,930	168,165

구 분	수 가(단위: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6,190	23,480	31,650	40,280	46,970	52,880	58,930	65,000

구 분	수 가(단위: 원 / 회당)		
방문목욕	차량이용(차량 내)	차량이용(가정 내)	차량미 이용
	82,160	74,070	46,25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2023년1월1일 기준)

본인일부부담금감경대상자확대 및 감경률 차등적용	
현 행	
대상자	본인부담률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이하	60%
기준중위소득 51~100%이하	40%

○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1)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 2)그 밖의 비 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로 할 수 있다.

6.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한다. 신원인수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시켜야 할 권리 및 의무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구 분	내 용
신원인수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나 본 기관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상담)후 본 기관 서비스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원인수를 한다.

구 분	내 용
신원인수인의 권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내역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등) 따라 알 권리가 있다. 2)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방문요양서비스)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연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기관이 실시하는 방문상담 등을 통해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공단사이트,스마트앱등을 통한 등) 7) 서비스 해지 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를 할 수 있는 권리 9)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위하여 해당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
신원인수인의 의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과 질병상태 및 가족환경 등의 자료와 기타 필요한 개인정보자료(의료기록 등)를 제공하여야하며,(미 제공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과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수급자,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방문요양 업무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또한 방문요양의 목욕도움 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일방적인 요구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불미스러운 사고발생시 기관은 이에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 급여 항목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①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금치산또는 파산선고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시등) 5)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시 본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6)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수급자의 사망,시설입소, 타 지역이사(거주지변경)병원입원,해외출국등)등을 제외하고 기관의 잘못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일 때 타 센터로 수급자를 이동하지 않는다. 7) 수급자와 가족이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8) 급여제공직원의 부정을 담합하지 않으며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의무

구 분	내 용
계약의 해제	<p>□수급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할 경우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법정감염 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3) 계약급여종류 서비스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만료일전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p>□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서비스이용제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들어 났을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4)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고 서비스대상자와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로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가 월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아니하였을때 6)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본 기관과 계약해지를 하지 않고 방문요양서비스 중에 타 센터와 계약을 하고 본 기관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7) 기관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단,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연락이 닿지 않을때에는 문자 또는 SNS를 통해 통보할 수도 있다. <p>□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p>

구 분	내 용
기관의 수급자 관리의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병원입원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단,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않은 경우는 제외) 3)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 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4)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있다. (지역연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